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2. 19 선고 2015가단817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 2016. 1. 19.

판결 선고 2016. 2. 19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

가. 피고 C은 서울 노원구 E 대 516㎡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ㄱ)부분 지상 벽돌조 단층 건물 45㎡에서 퇴거하고,

나. 피고 D은 서울 노원구 E 대 516㎡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23, 24, 25, 26, 27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ㄷ)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와즙 단층 건물 4㎡와 F 대 43㎡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28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ㄹ)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와즙 단층 건물 12㎡를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 326,400원과 2015. 8. 6.부터 위 (ㄷ)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8,000원씩의, 2015. 5. 13.부터 위 (ㄹ)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,400원씩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 : 서울 노원구 E 대 516m²(이하 편의상 '이 사건 제1토지'라고 한다)가 현재 원고들의 공동소유인데, 피고 C이 그중 주문 제1항에 적힌 건물 부분을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위 피고에 대한 퇴거청구.

나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)

2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

가.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4. 8. 5.에, 서울 노원구 F 대 43m²(이하 편의상 '이 사건 제2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는 2015. 5. 12.에 각각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(원고들의 공유지분 : 각각 1/2지분씩), 피고 D이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그중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각각의 건물 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각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들을 각각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그 각 침범 부분에 해당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각각 인도함과 아울러,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각각의 점유·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(2)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줄곧 위 각 토지 부분을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, 피고 D의 위 주장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내세우는 것으로 선행하여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, 그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현재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

내세우는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하여, 피고 D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.

(3) 나아가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위 각 해당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 아래 표의 해당란에 각각 적힌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결국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계산상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각각 적힌 금액이 된다.

이 사건 제1토지	2014. 8. 6. ~ 2015. 8. 5.	m ² 당 매월 6,800원
이 사건 제1토지	2015. 8. 6. 이후	m ² 당 매월 7,000원
이 사건 제2토지	2015. 5. 13. 이후	m ² 당 매월 6,700원

나. 맺음말

결국 피고 D은 원고들에게,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(ㄷ)부분 지상 건물부분 4m²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(ㄹ)부분 지상 건물부분 12m²를 모두 철거함과 아울러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(ㄷ)부분에 관하여 2014. 8. 6.부터 2015. 8. 5.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326,400원(= 6,800원 X 4m² X 12개월)과 2015. 8. 6.부터 위 (ㄷ)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8,000원씩(= 7,000원 X 4m²)의, 2015. 5. 13.부터 위 (ㄹ)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,400원씩(= 6,700원 X 12m²)의 각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각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.

판사박관근

별지